

대한상의 브리프

뉴스1 장은지 기자



제120호 2020년 4월 13일



21대 국회가 5월 30일 시작됩니다. 이번 호는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벤처·스타트업들을 위한 입법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정치부 전문 기자의 취재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벤처가 ‘21대 국회’에 제언합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할 우리 스타트업들은 여전히 신산업의 길을 완고하게 막아선 ‘대못 규제’와 사투 중이다.

지난 1월 9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규제개혁 법안들은 경제계의 속을 태우고 있다.

1분 1초가 아까운 가운데 6월이 되면 20대 국회가 끝나고, 21대 국회가 시작된다. 21대 국회는 6·25 때보다도 못한 법안처리율을 기록한 20대 국회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그 첫걸음은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주체들의 성장 물꼬를 터줄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어야 한다.

21대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꼽아보자. 대전제는 ‘쉽게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불편하거나 걸림돌이 돼 온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특히 청년들도 소자본으로 창업 가능한 금융, 헬스케어, 사회서비스 등 서비스산업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공유경제 등을 기반으로 하는 4차산업의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청년벤처가 바라는 21대 국회 입법 과제]

구분	입법과제	법안 내용
국회 운영	국회법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혁신 패키지법(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 입법 영향 분석보고서 발간 일하는 국회 실현
의료	의료법 생명윤리법	원격의료 허용 의료데이터 활용,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 확대
금융	금융혁신법·전자금융거래법 보험업법	핀테크 스몰라이선스 도입 소액단기보험업 신설
소셜벤처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 경제 정의 규정 등 사회적 기업 공공구매 우선권 부여
4차산업 혁명	인공지능산업 진흥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4차산업 혁명 가속화

견제 없는 의원입법 시스템 개선해야

20대 국회에 발의된 총 법안 수는 25,000건을 돌파했다. 심사가 손쉽고 견제장치가 없는 의원입법 시스템 때문이다. 의원입법에는 ‘규제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아도 돼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 여러 단계의 필터링 절차를 밟는 정부입법과 달리 부실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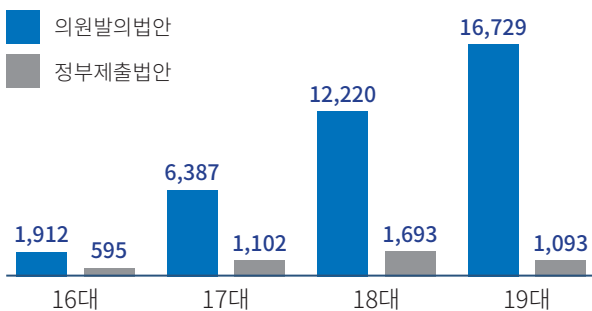
이를 악용해 정부가 의원을 통해 입법을 ‘청부’하는 일도 잦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업계와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의원입법 비중이 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에 대해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법안 발의 시 규제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라”라고 권고한 바 있다.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체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입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과잉입법의 폐해를 없애려면, 의원입법도 규제 신설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나 입법조사처가 입법 영향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입법조사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는 것이 첫 순서다.



[넘쳐나는 의원발의 법안]

(단위 : 개)



※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원격의료, 이제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진료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원격의료’는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격医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병원 내 감염을 막고,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 인력·설비로도 많은 환자를 치료·관리할 수 있어서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원격자문)는 가능하다. 그러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불가능하다.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수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2018년 2월, 유기준 미래통합당 의원 대표발의)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2018년 8월 이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기득권 갈등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시가 급한 업계는 원격医료를 규제샌드박스에 신청해 혁신성과 안전성 검증 사례를 확보한 뒤, 원격 모니터링에서 원격진료로 단계적 허용을 가능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의료법 개정에 힘쓰겠다는 구상이다.

유전자치료 분야도 국회에 가로막혀 있다.

국내에서도 유전자가위 등 최신 교정 도구를 이용한 유전자치료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0개월째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유전자치료 스타트업은 협력을 통해 생명윤리법 개정안의 재발의를 요청하고 보건복지위를 방문해 법안 통과를 호소할 계획이다.

금융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자

핀테크 분야 ‘스몰라이선스(Small License)’도 시급하다. 인허가 단위를 더 작게 분리하고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특화 금융사를 쉽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핀테크 스타트업의 숙원이다.



[스몰라이선스 제도 적용방안]

적용대상	개선필요규제	적용방식
혁신금융사업자	영업행위규제	금융혁신법상 규제개선시까지 특례연장(핀테크+금융회사)
	진입규제	금융혁신법상 임시 허가 부여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제외)
신규참가자		개별 금융업법 인허가 부여

※ 자료 : 금융위원회

현재는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등 금융업종별 법에서 허가하는 일 중 하나를 하려면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스몰 라이선스가 도입된다면 필요한 부분에서만 허가를 받아 대기업 등 대자본만 진입 가능했던 금융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벤처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와 혁신의 싹이 꺾이지 않게 할 수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선 금융위원회가 발의를 준비 중인 ‘금융혁신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혁신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금융 위험도(Risk)가 낮은 여행자보험 등 소액단기보험업도 자본금 최소 50억 원이라는 규제에 막혀있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소비자들에게 기존 보험상품보다 저렴하고 개인 맞춤형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자본금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새로운 상품 아이디어가 있어도 ‘중개’만 할 뿐 개발과 판매는 막혀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의 규모와 무관하게 취급 보험상품 종류별로 필요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되는 문제가 있다.

지난해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보험상품의 종류·연간 보험료 규모 및 기간 등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한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해 소액단기보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를 넘기도록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소액단기보험업법 신설(금융위)]

어떻게? 보험업법 개정

기존
소액·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 해도 생명·질병 등 일반보험업(자본금 50~300억 원 등)으로 허가 필요
≡
개선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별도 허가 기준 (자본금 50억 원 이하 등) 마련

예상 효과는? 다양한 맞춤형 보험업 창업 촉진

※ 자료 : 웹진 예술경영

사회적경제 기본법도 무산 위기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사회적 경제 관련 법안 통과는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공은 21대 국회로 넘겨졌다.

여전히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담론만 있을 뿐 정착 사회적 기업 지원 근거는 모호하다. 사회적 기업 현장에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담당 부처별로 주먹구구식 정책을 내놓을 뿐인 데다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없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총괄기구로 돼있어 실제 정부 부처에서는 서로 담당을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개념과 정의도 제각각이다. 사회적 기업에 뛰어들어 지원사업 공모가 나와도 어디에 신청할지 몰라 서류를 들고 이곳저곳을 전전한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현재 인증제인 사회적 기업에 대해 진입 장벽을 낮춰 사회적 경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일정기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해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 참여 및 재정지원 신청을 희망한 기업에 대한 평가근거를 신설하고, 경영공시 및 사전교육을 의무화해 등록 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맺음말

이외에도 AI 진흥법, 클라우드 활용 촉진을 위한 클라우드 발전법, 3D프린팅산업 진흥법 등 4차산업 혁명을 앞당길 수 있는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20대 국회는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오가며 경제계 뿐 아니라 국민들 모두에게 참담함을 안겼다. 먼지만 쌓이다 폐기될 운명인 법안들을 뒤로하고 여야는 총선 모드로 전환한 지 오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매달 상시적으로 국회를 열고 특별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삭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장실은 “문 의장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망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

문 의장이 발의한 법안에는 매월 1일(12월에는 10일)에 임시회를 열고, 회기 중 법률안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정기회 5회 이상, 임시회 2회 이상 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20대 국회 내 통과된다면, 21대 국회는 미약하나마 변화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벤처들은 오늘도 대못규제로 사투 중이다. 부디 21대 국회가 이들에게 쉽게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촉구한다. 

국내·외 경제지표

2020년 4월 13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

	2018	2019 ^(E)	IMF		OECD	
			2020 ^(P)	2021 ^(P)	2020 ^(P)	2021 ^(P)
한국	2.7	2.0	2.2	-	2.0	2.3
세계	3.6	2.9	3.3	3.4	2.4	3.3
미국	2.9	2.3	2.0	1.7	1.9	2.1
중국	6.6	6.1	6.0	5.8	4.9	6.4
일본	0.8	1.0	0.7	0.5	0.2	0.7
EU	1.9	1.2	1.3	1.4	0.8	1.2

* E -잠정치(Estimate) / P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 원(환율), 달러(유가))

	2017	2018	2019	'19.11월	12월	'20.1월	2월	3월
원/달러	1,131	1,100	1,166	1,167	1,176	1,164	1,194	1,220
원/엔(100엔)	1,009	996	996	1,073	1,077	1,065	1,085	1,135
원/위안	167.5	166.4	166.4	166.3	167.6	168.0	170.5	173.8
원/유로	1,276	1,299	1,299	1,291	1,306	1,294	1,302	1,350
유가(Dubai)	53.2	69.7	63.5	62.0	64.9	64.3	54.2	33.7

3. 산업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2017	2018	2019	'19.11월	12월	'20.1월	2월	3월
산업생산	2.6	1.6	0.6	1.6	3.9	-0.6	4.9	-
소매판매	1.9	4.3	2.4	3.7	4.5	1.8	-2.3	-
설비투자	14.4	-3.6	-6.2	1.1	11.1	-4.2	15.6	-
수출	15.8	5.4	-10.4	-14.5	-5.3	-6.5	4.3	-0.2
수입	17.8	11.9	-6.0	-13.0	-0.8	-5.4	1.5	-0.3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